

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

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3월 4일

순 천 시 의 회 의 장



1. 조례안 목록

○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입법예고 기간 : 2022. 3. 4. ~ 3. 10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3월 10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 · 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 또는 이메일

1) 주 소 :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(장천동, 순천시의회) / 우 : 57956

2) 이메일 : alpff@korea.kr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(전화 : 061-749-495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. 끝.

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나안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3665호
----------	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3. 4.

발 의 자 : 나안수 의원, 이복남 의원

1. 제안이유

- 순천시 미술대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초대작가의 자격요건을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운영위원장 위촉 방식 개정(안 제4조)
 - 한국미술협회순천지부장이 당연직 → 위원 중에서 호선
- 운영위원장의 운영위원 추천을 삭제하고, 구성 위원에 ‘한국미술협회순천지부장’ 추가(안 제5조)
- 초대작가의 자격요건 개정(안 제23조)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관련법령 : 해당없음

5. 예산상황 : 해당없음

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한국미술협회순천지부장이 맡으며”를 “위원 중에서 호선하며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며,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”를 “하며,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한국미술협회순천지부장

제23조제1항제1호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3회”를 “4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조직) ①·② (생략) ③ 운영위원장은 <u>한국미술협회</u> <u>순천지부장이</u> 말으며, 대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 ④ (생략)	제4조(조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위원</u> <u>중에서</u> <u>호선하며</u>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호의 사람 중 20명 이내로 <u>하며, 운영위원장이 추</u> <u>전하고</u> 대회장이 위촉한다. 1.·2. (생략) <u><신 설></u> 3. ~ 6. (생략) ③ (생략)	제5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(현행 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 <u>하며,</u>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<u>한국미술협회순천지부장</u> 4. ~ 7. (현행 제3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초대작가) ① 시전 초대작 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대회장이 지정하 는 자를 말한다. 1. 추천작가로서 계속 5회 이상 시전에 출품한 자. <u>단 중도 1회</u> <u>이상 불참시 3회 연장하여 총</u> <u>8회 이상 시전에 출품한 자</u> 2.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	제23조(초대작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, <u><후단 삭</u> <u>제></u> 2. -----

으로서 전국규모 미술·건축·사
진·공예·서예대전(국전포함)에
서 3회 이상 특선한자 또는 7
회 이상 입선한자

② (생 략)

--- 4회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참 고

관련법령 등 자료

순천시 미술대전 조례

[시행 2021. 7. 5.] [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295호, 2021. 7. 5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순천시의 미술문화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 미술대전(이하“시전”이라 한다)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최) ① 시전은 매년 7월부터 11월중에 개최하며 그 내용을 개최일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공고 내용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작품의 규격
2. 작품의 출품수 및 출품료
3. 작품의 접수기간 및 장소
4. 작품의 전시기간, 장소 및 관람료
5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3조(주최 및 주관) ① 시전은 순천시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가 주관한다.

② 시전을 개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, 단체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4조(조직) ① 시전의 조직으로 대회장, 운영위원장, 간사를 둔다.

② 대회장은 순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며 시전을 대표한다.<개정 2021.07.05>

③ 운영위원장은 한국미술협회순천지부장이 맡으며, 대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간사는 한국미술협회순천지부 사무국장이 되며 대회장의 명을 받아 시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대회장은 시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매년 구성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호의 사람 중 20명 이내로 하며,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회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17.04.21>

1. 순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
2. 당해 시전 관련 주무 국·소장

3. 한국사진작가협회 순천지부장
4. 시전 초대작가<개정 2021.07.05>
5. 시전 추천작가<개정 2021.07.05>
6. 심사위원 역임자 중 부문별 각 1명.

③ 운영위원회(심사위원회 포함)는 그 해의 시전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. 더불어 소속 위원들의 임기도 종료된다.<개정 2017.04.21>

제6조(운영위원회 기능)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<개정 2017.04.21>

1.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
2. 시전 일정 및 전시, 공모작품 섭외 등 시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<개정 2021.07.05>
3. 기타 대전에 관하여 대회장이나 운영위원장이 부의한 사항

② 운영위원장은 시전 운영의 전반에 대해 관리 및 책임을 진다.<개정 2021.07.05>

제7조(심사위원회 구성) ①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로 구성하되, 운영위원회에서 각 부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대회장이 위촉한다.

② 각 부문별 심사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③ 각 부문 심사위원회는 호선으로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.

④ 각 부문별 분과위원장중에서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결정하고 심사업무를 총괄한다.

⑤ 운영위원은 당해 연도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8조(심사위원회 기능)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출품작품들을 심사하여 수상작품을 선정
2. 심사위원회 운영을 비롯하여 심사에 관련된 세부사항 결정
3. 기타 대회장이나 운영위원장이 부의한 사항

제9조(심사위원 자격) 심사위원은 본 시전 초대작가, 본 시전 이상의 품격과 위상을 가진 각종 공모전에서 운영 및 심사위원, 초대작가를 역임한자, 미술대전 관련 분야 대학교수, 국제적인 미술대회나 국제규모의 아트페어 큐레이터를 역임한자,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한다.<개정 2021.07.05>

제10조(심사결과 보고) ① 심사는 각 부문별로 분과위원장 책임 하에 진행되며 그 결과를 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한다.

② 보고를 받은 심사위원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한다.

③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운영위원장은 대회장에게 보고하며 대회장은 이를 즉시 공개 발표한다.

제11조(공유재산의 사용 등) ① 시장은 시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·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 신설 2021.07.05]

제12조(참가부문) ① 시전에 참가부문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7.04.21>

1. 한국화
2. 서양화
3. 수채화
4. 문인화
5. 서예
6. 공예
7. 서각
8. 디자인(일러스트레이션 포함)
9. 판화
10. 사진
11. 조각(설치미술 포함)

② 운영위원장은 필요 시 참가부문을 조정 할 수 있다.

제13조(출품인의 자격) ① 시전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.

② 작품의 제작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출품할 수 있다.

제14조(작품의 규격) ① 시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의 규격은 시전 개최 공고 전 까지 대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② 대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작품의 규격을 정한 경우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시전 개최 공고 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(출품원서) ① 시전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작품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품원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작품에는 매점마다 명제, 제작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품표를 붙여야 한다.

③ 운영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원서와 출품작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작품의 훼손 유무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출품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제16조(출품료) ① 대회장은 시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품료를 받을 수 있다.

② 출품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전 개최 공고를 할 때 함께 공고한다.

제17조(반출금지) 접수된 출품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이를 반출하지 못하며, 전시할 작품은 회기종료 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한다.[제16조에서 이동 2021.07.05]

제18조(수상작품 선정) ① 출품작품 중에서 우수작품을 입선작품으로 하고 입선작품 중에서 최우수작품을 특선작품으로 한다.

② 특선작품 중에서 부문별로 대상, 우수상을 각각 1점씩 선정한다. 그중 가장 뛰어난 작품을 종합대상으로 선정한다. 다만, 출품작이 적거나 작품 수준이 떨어진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.

③ 시전 활성화를 위해 출품작품 중 특별상을 선정 할 수 있다.<개정 2021.07.05>

④ 입·특선작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입·특선장을 수여하고, 수상작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상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.

⑤ 종합대상작품과 각 부문 대상작품, 우수상 작품은 순천시에 귀속시키며 귀속된 작품은 시의 물품으로 관리한다.

제19조(전시작품) ① 시전에 전시할 수 있는 작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입(특)선한 작품
2.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의 작품
3.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의 작품

②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작품의 전시는 1인당 1점에 한한다.

제20조(전시위치) 시전에 전시하는 작품의 전시위치 및 배열은 운영위원장이 정하며, 출품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 다만, 옥외전시장을 활용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[제19조에서 이동 2021.07.05]

제21조(낙선작품의 반품) ① 출품인은 그 작품이 시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낙

선될 때에는 그 심사결과의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찾아가야 한다.

② 대회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,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22조(추천작가) ① 시전 추천작가라 함은 시전에 출품하여 총 12점의 점수를 얻은 자로 그 점수는 아래와 같다.<개정 2021.07.05>

1. 종합대상 8점
2. 대상 6점
3. 우수상 및 특별상(후원자 매입상) 5점
4. 특선 3점, 입선 1점

② 추천작가의 지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.<신설 2017.04.21>

제23조(초대작가) ① 시전 초대작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회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.<개정 2017.04.21>

1. 추천작가로서 계속 5회 이상 시전에 출품한 자. 단 중도 1회 이상 불참시 3회 연장하여 총 8회 이상 시전에 출품한 자<개정 2021.07.05>
2.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전국규모 미술·건축·사진·공예·서예대전(국전포함)에서 3회 이상 특선한자 또는 7회 이상 입선한자

② 초대작가의 지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.<신설 2017.04.21>

제24조(관람 및 질서) ① 시전에 수상 작품은 공개 전시회를 갖는다.

② 관람시간은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회장이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다.

③ 대회장은 전시장의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25조(수당 및 여비)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[제24조에서 이동 2021.07.05]

제26조(관람료) ① 대회장은 전시작품의 관람인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.

② 관람료의 징수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관람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제2조제2항에 의거하여 시전 개최 공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.

제27조(보고 및 기록보존) 대회장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영구히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.

1.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위원명단(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)
2. 수상자 명단(별지 제8호 서식)

3. 시전 추천(초대)작가 지정서 교부 대장(별지 제9호 서식)<개정 2021.07.05>

제28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[제27조에서
이동 2021.07.05]